[미래에셋증권]

# 파생결합증권(ELS) 핵심(요약)상품설명서

## 【필독】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 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높으면서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거나, 투자 초심자이거나,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 [유의]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①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 ②과거 일부 고수익 사례에 대한 대표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과소 평가하여 투자할 우려, ③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변화에 의한 효과를 저평가하여 투자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투자자 투자 유의] 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투자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으로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 |
|---|---|
| 금융상품명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ELS) |
| 손실가능성 등 위험 및 손실발생 사례 | **1. 동일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손실사례**<br>ELS 상품은 경기변동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일시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br>본 상품과 유사한 구조의 상품 중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로 구성된 [미래에셋증권 제30382회 파생결합증권(스텝다운형)]의 경우, 기초자산인 HSCEI 지수의 급락으로 조기상환조건 미충족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1월 해당 ELS 잔액 7.56억원에서 **4.32억원의 손실액이 확정**되고 3.24억원이 상환되는 등 **약 57.17% 내외의 만기상환 손실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br>또한 유사한 구조의 상품 중 기초자산에 개별 종목이 포함된 [미래에셋증권 제29754회 파생결합증권(스텝다운형)]의 경우, 기초자산인 네이버 종목의 급락으로 조기상환조건 미충족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8월 해당 ELS 잔액 7.00억원에서 **4.37억원의 손실액이 확정**되고 2.63억원이 상환되는 등 약 **62.5% 내외의 만기상환 손실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br><br>**2. 그 외 금융투자상품 대표 손실사례**<br>**가.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2016, 2024)**<br>2016년에는 홍콩 HSCEI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홍콩 HSCEI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ELS들에서 약 10%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홍콩 HSCEI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약 50%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br><br>**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2019)**<br>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 등을 편입한 펀드의 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2019년 9월~10월사이 **평균 손실률 52.7%(최대 98.1%)**를 기록하며 만기도래 또는 중도 환매된 바 있습니다.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파생결합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이 설명서와 함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able>
<tr><td>금융상품명</td><td colspan="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ELS(파생결합증권)</td></tr>
<tr><td>금융상품의 내용</td><td colspan="4">• 판매직원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 rowspan="2">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td><td>ELS</td><td colspan="3">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정해지는 파생결합증권이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원본에 손실이 국한되며 특정 자산에 연계하여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정의합니다.</td></tr>
<tr><td>DLS</td><td colspan="3">DLS는 주식이나 주가지수 외의 이자율, 환율, 유가 등의 자산과 연계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td></tr>
<tr><td>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td><td colspan="4">동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실제 중도환매 금액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 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수준에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 rowspan="2">유동성 위험</td><td>중도환매 불가</td><td>중도환매 시 비용발생</td><td>중도환매 허용</td><td rowspan="2">6개월 이내 중도환매 시 공정가액(기준가)의 90% 이상, 6개월 이후 중도환매 시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 지급</td></tr>
<tr><td></td><td></td><td>O</td></tr>
<tr><td>위법계약해지권</td><td colspan="4">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td></tr>
<tr><td>자료열람요구</td><td colspan="4">본 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다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이 경우 첫날 산입) 제공</td></tr>
<tr><td>청약철회권</td><td colspan="4">본 상품은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td></tr>
</table>

| | |
|---|---|
|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1588-6800) 및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위험등급의 의미 |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은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아래 표에 따른 종합등급으로 최종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br>- 시장위험등급 결정요인 :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액 등 고려<br>- 신용위험등급 결정요인 :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 |

〈시장위험등급과(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 구분 | MR1(고위험) | MR2 | MR3 | MR4 | MR5 | MR6(저위험) |
|---|---|---|---|---|---|---|
| CR1(고위험) | 1등급 | 1등급 | 1등급 | 1등급 | 1등급 | 1등급 |
| CR2 | 1등급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등급 | 2등급 |
| CR3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3등급 |
| CR4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4등급 | 4등급 |
| CR5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5등급 |
| CR6(저위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등급

| | | |
|---|---|---|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 매우 높은 위험<br>[ 1등급 ] |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매우높은위험(1등급)에서 매우낮은위험(6등급)까지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위험등급 | |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 유의사항 |
|---|---|---|---|
| 매우 높은 위험 | 1등급 | 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 20% 초과이며 표 하단 위험도 상향 조정 조건 적용 |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높은 위험 | 2등급 | 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 20% 초과형 |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다소 높은 위험 | 3등급 | 원금의 80% 이상 지급형 | 위험선호도가 다소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보통 위험 | 4등급 | 원금의 90% 이상 지급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낮은 위험 | 5등급 | 원금의 95% 이상 지급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매우 낮은 위험 | 6등급 |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 외화상품은 환헤지가 되지 않으면 상기 분류표에서 위험도 단계 상향 조정합니다. (예외:외화RP, 외화 발행어음)
- 1단계 상향 통화: USD, EUR, GBP, JPY (상기 통화 이외의 통화는 2단계 상향 조정합니다.)

※ 신용등급은 다수의 적격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중 좋은 등급(Second Best)을 사용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기 표 등급과 관계없이 개별 검토하며 2등급 이상으로 결정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분류표에서 위험도를 1단계 상향 조정합니다.
①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초자산의 종류가 부동산, 특별자산 등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③ 기초자산 가격의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 환산 표준편차가 25%을 초과하는 경우
④ 원금손실조건 (낙인 배리어가 60% 이상인 경우 또는 노낙인 상품일 때 만기 배리어가 70% 이상인 경우)
*노낙인 상품은 마지막 배리어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함
⑤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⑥ 발행사의 신용위험도가 A-미만인 경우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판매직원 설명의무 이행 확인 (판매직원 기재)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 위험, 적합한 투자자 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내용과 상품의 위험도, 최대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위 내용과 관련한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지점) _____ WM (전화번호) (_____) _____ - _____

(판매직원 직위) _____ (직원 성명) _____(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매우높은위험, 원금비보장형

| | |
|---|---|
| 투자위험등급 : 1등급<br>[ 매우높은위험 ] | **미래에셋증권(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정부**가 본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예금보험공사 비보호<br>예금자보호법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ELS · DLS · ELB · 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 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미래에셋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5월 20일 NICE신용평가 , 2026년 06월 01일 한국신용평가 , 2026년 06월 02일 한국기업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동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개인일반투자자)의 투자 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1. 동 파생결합증권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상품판매가 불가한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2.(자료열람요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제공

13.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금융투자 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 상품위험 구분 | | | 매우높은위험 (1등급) | 높은위험 (2등급) | 다소높은위험 (3등급) | 보통위험 (4등급) | 낮은위험 (5등급) | 매우낮은위험 (6등급) |
|---|---|---|---|---|---|---|---|---|
| ELS,DLS [1] | | |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형 | 원금의 80% 이상 지급형 | 원금의 90% 이상 지급형 | 원금의 95% 이상 지급형 | |
| 신용연계 [2] DLS | 국내 | | 준거채무 BBB0 이하 | 준거채무 BBB+ | 준거채무 A- 이상 | | | |
| | 해외 | S&P, 피치 | 준거채무 B+ 이하 | 준거채무 BB- ~ BB+ | 준거채무 BBB- 이상 | | | |
| | | 무디스 | 준거채무 B1 이하 | 준거채무 Ba3 ~ Ba1 | 준거채무 Baa3 이상 | | | |
| 파생결합사채 | ELB,DLB | |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채권의 위험등급 준용 | | | | | |
| 투자자구분 | | | 성장형 | 성장추구형 |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공통사항] | | | | | | | | |

※외화상품은 환헤지가 되지 않으면 상기 분류표에서 위험도 단계 상향 조정함(예외: 외화RP, 외화 발행어음)
-1단계 상향 통화: USD, EUR, GBP, JPY
상기 통화 이외의 통화는 2단계 상향 조정함
※신용등급은 다수의 적격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중 좋은 등급(Second Best)을 사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기 표 등급과 관계없이 개별 검토하며 2등급 이상으로 결정함

[주석사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①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초자산의 종류가 부동산, 특별자산 등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③ 기초자산 가격의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을 초과하는 경우
④ 원금손실조건 : 낙인 배리어가 60% 이상인 경우 또는 노낙인형 상품일 때 만기배리어 요건이 70% 이상인 경우
*NO KI(노낙인) 상품은 마지막 배리어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함.
⑤ 레버리지 여부(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⑥ 발행사의 신용위험도가 A- 미만인 경우
2) 발행사의 신용위험도가 A- 미만인 경우 1개 등급 상향

## ※ 목표시장 설정 및 설정 근거

- 목표시장: 위험등급(6단계)중 1등급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함.

- 목표시장 분석표

| 목표시장 설정기준 | 해당요소 |
|---|---|
| 고객유형 | ■ 일반투자자<br>■ 전문투자자 |
| 지식과 경험 | □ 낮음<br>■ 중간<br>■ 높음 |
| 손실감내능력 | ■ 원금대비 100% 손실 감내<br>□ 원금 초과 손실 감내 |
| 위험추구성향 | □ 위험회피형<br>(투자성향:안정추구형, 안정형 / 상품위험등급:5,6등급)<br>□ 위험중립형<br>(투자성향:위험중립형 / 상품위험등급:4등급)<br>■ 위험선호형<br>(투자성향:성장형,성장추구형 / 상품위험등급:1,2,3등급) |
|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기간 | □ 1년 미만<br>■ 1년 이상 ~ 3년 이하<br>□ 3년 초과 |
| 보유 가능기간 | ■ 중도환매가능<br>■ 만기 보유 |

-목표시장 설정 근거: 해당상품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 하는 상품 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7 에서 정의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에 해당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 에 따라, 이 상품의 목표시장은 위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지식과 경험 손실감내능력 위험 추구 성향 및 투자 기간 등의 각 항목과 더불어 이 상품의 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상품개요

| 항목 | | 내용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br>(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 KOSPI200 지수 |
| 모 집 총 액 | | 10,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 10,000원 |
| 발행 수량 | | 1,0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 1,0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br>(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숙 려 기 간 |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납 입 일 | | 2026년 09월 23일 |
| 배정 및 환불일 | | 2026년 09월 23일 |
| 발 행 일 | | 2026년 09월 23일 |
| 만 기 일 | | 2029년 09월 19일 |
|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 |

| 항목 | 내용 |
|---|---|
| | 거나, 미래에셋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 (http://securities.miraeasset.com) 상에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을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br><br>-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청약종료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 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

**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총 1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격은 2026년 09월 08일 기준 [9,588.28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6년 09월 08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 목 | 내 용 |
|---|---|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 KOSPI200 지수 : 37.69% |
|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 - 해당없음 |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 영업일 역사적 상관계수]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권리의 내용

###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4.5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09.0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3.5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18.0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2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 (2)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br>-> 액면금액 * 104.50% 지급 | 4.50%<br>(연 9.00%) |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br>-> 액면금액 * 109.00% 지급 | 9.00%<br>(연 9.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br>-> 액면금액 * 113.50% 지급 | 13.50%<br>(연 9.00%)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br>-> 액면금액 * 118.00% 지급 | 18.00%<br>(연 9.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br>->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br>(연 9.00%) |
| 만기 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27.00%<br>(연 9.00%) |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27.00%<br>(연 9.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br>{(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3.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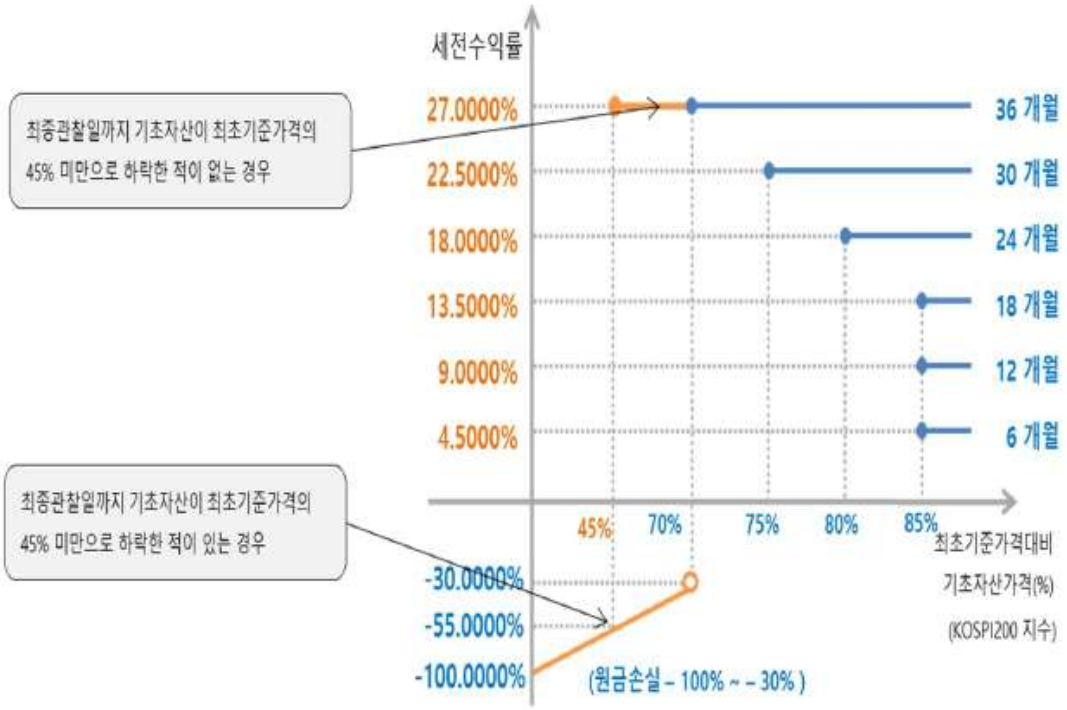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 | |
|---|---|
| 만기 원금손실 기준 | [2029년 09월 14일]까지 KOSPI200 지수 가격이 [2026년 09월 23일]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

가. 손실구조 예시 (1억원 투자시)

- 기초자산 KOSPI200 지수의 최초기준가격이 1,112.13pt인 경우

나. 손실사례(만기평가일에 만기 상환가격 미충족, KI터치 발생 가정)

- 만기평가일까지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500.4585pt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

| 구분 | 내용 | 손실률 |
|---|---|---|
| 사례1 |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556.065pt일때<br>→ 1억 + [1억 × (-50%)] = 5,000 만원 상환 | -50% |

| 구분 | 내용 | 손실률 |
|---|---|---|
| 사례2 |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444.852pt일때<br>→ 1억 + [1억 × (-60%)] = 4,000 만원 상환 | -60% |
| 사례3 |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222.426pt일때<br>→ 1억 + [1억 × (-80%)] = 2,000 만원 상환 | -80% |
| 사례4 |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0pt일때<br>→ 1억 + [1억 × (-100%)] = 0 원 상환 | -100% |

## 4.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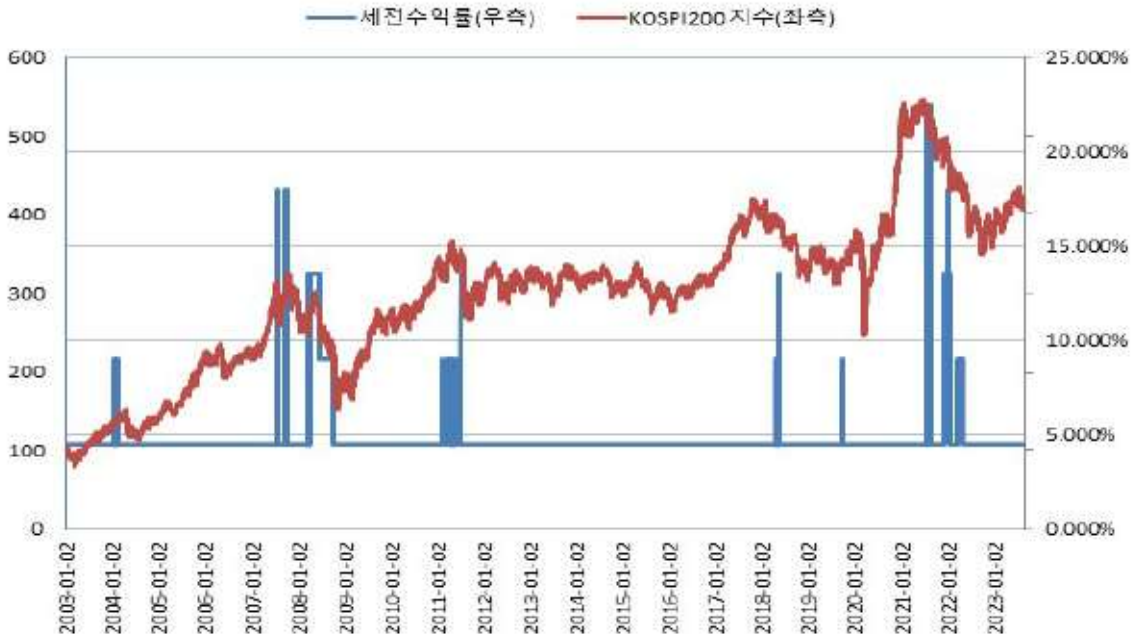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을시)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수익률 모의실험)

| 상환구분 | 수익률 | 발생횟수 | 발생빈도 |
|---|---|---|---|
| 1차 조기상환 | 4.50% | 4,855 | 94.94% |
| 2차 조기상환 | 9.00% | 155 | 3.03% |
| 3차 조기상환 | 13.50% | 88 | 1.72% |
| 4차 조기상환 | 18.00% | 11 | 0.22% |
| 5차 조기상환 | 22.50% | 5 | 0.10% |
| 만기상환 | 27.00% | 0 | 0.00% |
| 만기상환손실 | -10% ~ 0% | 0 | 0.00% |
| | -20% ~ -10% | 0 | 0.00% |
| | -30% ~ -20% | 0 | 0.00% |
| | -40% ~ -30% | 0 | 0.00% |
| | -50% ~ -40% | 0 | 0.00% |
| | -50%이하 | 0 | 0.00% |
| 진행중 | | 0 | 0.00% |

| 상환구분 | 수익률 | 발생횟수 | 발생빈도 |
|---|---|---|---|
| Total | | 5,114 | 100.00% |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3년 01월 02일부터 2023년 09월 01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3년 01월 02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114회)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5. 중도상환에 대한 사항

o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시장 교란사유 발생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
|---|---|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발행일 익 영업일부터 **중도상환 신청 불가능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단, 조기/만기 상환평가 확정시 중도상환 신청 불가)** |
| **중도상환 신청불가능일** | 다음 ①부터 ④까지의 해당 영업일<br>① 최종 관찰일 이전 4영업일부터 최종 관찰일(포함) 까지의 영업일<br>② 자동조기상환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br>③ 만기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br>④ 수익지급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 |
|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신청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취소 가능<br>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 오후 4시까지 취소 가능 |

| | |
|---|---|
| 중도상환가격 평가일 |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중도상환신청일 당일<br>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중도상환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및 영업일<br>(단,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아시아자산은 가격결정일 당일의 종가(T), 비아시아자산은 가격결정일 전거래소영업일(T-1)의 종가가 모두 반영된 평가일의 공정가액이어야한다.) * 사례참조 |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 익영업일<br>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불포함) 익영업일 |
| 중도상환 신청 단위 |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 중도상환가격 |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금융상품 > ELS/DLS/ETN > ELS/DLS 기준가조회'에 게시되어 있어 중도상환 결정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상기한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수준에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 증권의 양도 신청가능일 및 단위는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및 단위와 동일 합니다. |

* 예시사례 : 기초자산이 HSCEI 지수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인 ELS를 중도상환신청후 신청일부터 결제일까지 휴장일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
[ 매영업일 오후7시 이후 고시되는 당일의 공정가액은 아시아자산의 경우는 당일종가, 비아시아자산의 경우에는 직전영업일의 종가가 반영된 가격]

중도상환요청시 민평가액 적용 사례예시

| |
|---|
| 중도상환요청시 : 중도상환결정일= 환매신청일(T)+ 익영업일(1)<br>월요일 공정가액 미적용 사유 : 홍콩휴장으로 인하여 HSCEI 의 종가가 미반영<br>화요일 공정가액 미적용 사유 : 유럽휴장으로 인한 EURO STOXX 50 의 종가가 미반영<br>=> 수요일 7시에 고시되는 공정가액이 위 사례에 중도상환 공정가액<br>(단, 한국거래소도 영업일이어야함 ) |

## 6. 투자자 유의사항

| | |
|---|---|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
| 발행인의 신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 환금성 제약의 위험 |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증권 보유자는 장외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양도하거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등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본 증권보유자에게 부여된 발행회사의 권리행사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과세 관련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권리내용의 변경 및 조기종결 위험 |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기종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

| | |
|---|---|
| |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7.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8. 자금의 사용목적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9.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목적

미래에셋증권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 10. 발행인의 요약 재무정보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6년 08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58기 반기보고서(2026년01월01일~2026년6월30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1. 기타 사항

※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상품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은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미래에셋증권 고객지원센터**(1588-6800)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설명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직원 확인 ] :
미래에셋증권 (_____)지점 (_____)_____(은)는 위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권리와 관련하여 고객_____에게 설명하고 교부하였으며,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_____, 홈페이지 http://securities.miraeasset.com).

년 월 일 설명직원성명 : (서명 또는 인)

**본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증권신고서 사본 등 열람장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본 간이투자설명서의 증권신고서는 2026년 09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9월 11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16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17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18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19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0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1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2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3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4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5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6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7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8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29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30회 파생결합증권(ELS)
미래에셋증권 제38131회 파생결합증권(ELS)

금 164,000,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11일
2. 모집가액 : 금 164,000,000,000 원
3. 청약기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4. 납입기일 : 2026년 09월 2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http://dart.fss.or.kr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 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미래에셋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5월 20일 NICE신용평가 , 2026년 06월 01일 한국신용평가 , 2026년 06월 02일 한국기업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증권은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동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개인일반투자자)의 투자 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1. 동 파생결합증권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상품판매가 불가한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자료열람요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제공

13.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금융투자 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 상품위험 구분 | | | 매우높은위험 (1등급) | 높은위험 (2등급) | 다소높은위험 (3등급) | 보통위험 (4등급) | 낮은위험 (5등급) | 매우낮은위험 (6등급) |
|---|---|---|---|---|---|---|---|---|
| ELS,DLS [1] | | |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형 | 원금의 80% 이상 지급형 | 원금의 90% 이상 지급형 | 원금의 95% 이상 지급형 | |
| 신용연계 [2] DLS | 국내 | | 준거채무 BBB0 이하 | 준거채무 BBB+ | 준거채무 A- 이상 | | | |
| | 해외 | S&P, 피치 | 준거채무 B+ 이하 | 준거채무 BB-~BB+ | 준거채무 BBB- 이상 | | | |
| | | 무디스 | 준거채무 B1 이하 | 준거채무 Ba3~Ba1 | 준거채무 Baa3 이상 | | | |
| 파생결합사채 | ELB,DLB | |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대응하는 채권의 위험등급 준용 | | | | | |
| 투자자구분 | | | 성장형 | 성장추구형 |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공통사항]
※외화상품은 환헤지가 되지 않으면 상기 분류표에서 위험도 단계 상향 조정함(예외: 외화RP, 외화 발행어음)
-1단계 상향 통화: USD, EUR, GBP, JPY
상기 통화 이외의 통화는 2단계 상향 조정함
※신용등급은 다수의 적격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중 좋은 등급(Second Best)을 사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기 표 등급과 관계없이 개별 검토하며 2등급 이상으로 결정함

[주석사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①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② 기초자산의 종류가 부동산, 특별자산 등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③ 기초자산 가격의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을 초과하는 경우
④ 원금손실조건 : 낙인 배리어가 60% 이상인 경우 또는 노낙인형 상품일 때 만기배리어 요건이 70% 이상인 경우
*NO KI(노낙인) 상품은 마지막 배리어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함.

⑤ 레버리지 여부(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⑥ 발행사의 신용위험도가 A- 미만인 경우
2) 발행사의 신용위험도가 A- 미만인 경우 1개 등급 상향

# 【 본　　문 】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원금비보장형]
(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 주가연계증권이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표시장 설정 및 설정 근거**

- 목표시장: 위험등급(6단계)중 1등급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함.
- 목표시장 분석표

| 목표시장 설정기준 | 해당요소 |
|---|---|
| 고객유형 | ■ 일반투자자<br>■ 전문투자자 |
| 지식과 경험 | □ 낮음<br>■ 중간<br>■ 높음 |
| 손실감내능력 | ■ 원금대비 100% 손실 감내<br>□ 원금 초과 손실 감내 |
| 위험추구성향 | □ 위험회피형<br>(투자성향:안정추구형, 안정형 / 상품위험등급:5,6등급)<br>□ 위험중립형<br>(투자성향:위험중립형 / 상품위험등급:4등급) |

| | |
|---|---|
| | ■ 위험선호형<br>(투자성향:성장형,성장추구형 / 상품위험등급:1,2,3등급) |
|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기간 | □ 1년 미만<br>■ 1년 이상 ~ 3년 이하<br>□ 3년 초과 |
| 보유 가능기간 | ■ 중도환매가능<br>■ 만기 보유 |

- 목표시장 설정 근거: 해당상품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 하는 상품 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7 에서 정의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에 해당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 에 따라, 이 상품의 목표시장은 위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지식과 경험 손실감내능력 위험 추구 성향 및 투자 기간 등의 각 항목과 더불어 이 상품의 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공모개요

### (1) 용어의 정의

| 항목 | 내용 |
|---|---|
| 1) 거래소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 2) 관련 거래소 |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br>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 3) 예정거래일 |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
| 4) 거래소영업일 |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한 예정거래일 |
| 5) 영업일 |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
| 6) 기초자산 산출기관 | - KOSPI200 지수: 한국거래소 |
| 7) 계산대리인 |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8) 교란일 |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 |

| 항목 | 내용 |
|---|---|
| | 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
| 9) 시장교란사유 |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br>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언제라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br><br>(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br>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br><br>(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br>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br><br>(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
| 10) 종가 |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 |
| 11) 예정폐장시간 |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
| 12) 평가일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수익지급평가일, 중도상환가격평가일, 조기종결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
| 13) 상환일 | 자동조기상환, 수익지급,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날 |
| 14)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금액, 수익지급금액, 중도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또는 만기상환금액 |

##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항목 | | 내용 |
|---|---|---|
| 종목명 | |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br>(매우높은위험,원금비보장)(상품위험등급:1등급) |
| 기초자산 | | KOSPI200 지수 |
| 모 집 총 액 | | 10,000,000,000원 |
| 1증권당 액면가액 | | 10,000원 |
| 1증권당 발행가액 | | 10,000원 |
| 발행 수량 | | 1,000,000증권 |
| 최소청약금액 | | 1,000,000원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br>(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숙려제도 대상 청약시작일 | 2026년 09월 14일 |
| | 숙려제도 대상 청약종료일 | 2026년 09월 17일 |
| 숙 려 기 간 |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
| 가입의사확인기간 |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납 입 일 | | 2026년 09월 23일 |
| 배정 및 환불일 | | 2026년 09월 23일 |
| 발 행 일 | | 2026년 09월 23일 |
| 전자등록기관 |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 비상장 |
| 자동조기상환 |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 현금결제 |
| 자동조기상환일<br>[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 만 기 일 | | 2029년 09월 19일 |
| 만기상환 | |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시 결제방법 | | 현금결제 |

| 항목 | 내용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br><br>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월수익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br><br>※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 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br><br>※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격은 2026년 09월 08일 기준 [9,588.28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6년 09월 08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 목 | 내 용 |
|---|---|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 KOSPI200 지수 : 37.69% |
|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 - 해당없음 |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 영업일 역사적 상관계수]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 항목 | 내용 |
|---|---|
| 증권 발행의 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 청약안내의 공고 | 청약 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 |

| 항목 | 내용 |
|---|---|
| | ://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 (2) 청약의 방법

| 항목 | 내용 |
|---|---|
|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거나, 미래에셋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상에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을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br><br>-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청약종료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 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 청약기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br>**(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09월 17일까지 |
| 숙 려 기 간 |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까지 |
| 가입의사확인기간 | 2026년 09월 22일 오후 5시까지 |
| 청약단위 |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을 청약단위로 합니다. |
| 청약한도 | [없음] |

| 항목 | 내용 |
|---|---|
| 청약증거금 |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br>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br><br>-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9월 23일 |
| 납입일 | 2026년 09월 23일 |
| 청약시 유의사항 |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br><br>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br><br>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br><br>4) 청약기간 중에는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br><br>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br><br>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br><br>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br><br>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br><br>9) 개인 일반투자자인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합니다. 이에 의하여 일부 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 적용에 따라 투자자간 청약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br><br>10)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고객으로부터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각 계좌별로 최소청약단위 금액을 선배정한 후, 선배정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각 계좌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청약 시점이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최소청약단위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예상 손익구조

### (1) 상황별 손익구조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 자동 조기 상환 | (1)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u>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u><br>-> 액면금액 * 104.50% 지급 | 4.50%<br>(연 9.00%) |
| | (2)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u>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u><br>-> 액면금액 * 109.00% 지급 | 9.00%<br>(연 9.00%) |
| | (3)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u>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u><br>-> 액면금액 * 113.50% 지급 | 13.50%<br>(연 9.00%) |

| 구분 | 내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 | (4)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br>-> 액면금액 * 118.00% 지급 | 18.00%<br>(연 9.00%) |
| | (5)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br>-> 액면금액 * 122.50% 지급 | 22.50%<br>(연 9.00%) |
| 만기 상환 | (6)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27.00%<br>(연 9.00%) |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 | 27.00%<br>(연 9.0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100% |

* 기재된 연 수익률은 상품별 비교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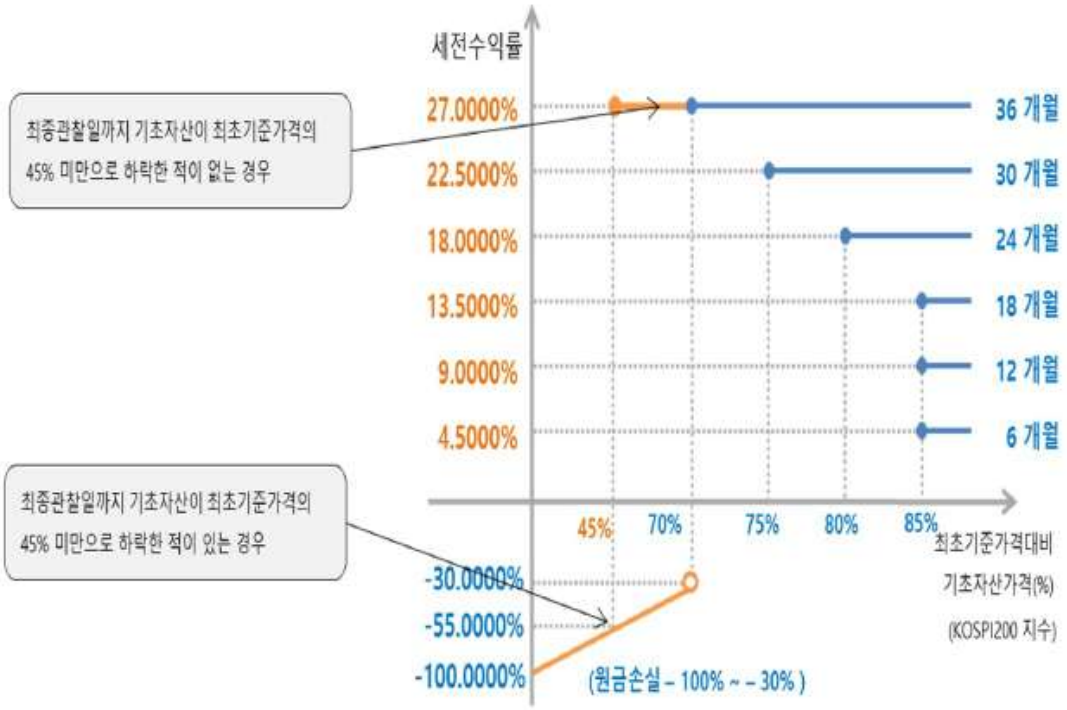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 | |
|---|---|
| 만기 원금손실 기준 | [2029년 09월 14일]까지 KOSPI200 지수 가격이 [2026년 09월 23일]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

가. 손실구조 예시 (1억원 투자시)

- 기초자산 KOSPI200 지수의 최초기준가격이 1,112.13pt인 경우

나. 손실사례(만기평가일에 만기 상환가격 미충족, KI터치 발생 가정)

- 만기평가일까지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500.4585pt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

| 구분 | 내용 | 손실률 |
|---|---|---|
| 사례1 |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556.065pt일때<br>→ 1억 + [1억 × (-50%)] = 5,000 만원 상환 | -50% |

| 구분 | 내용 | 손실률 |
|---|---|---|
| 사례2 |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444.852pt일때<br>→ 1억 + [1억 × (-60%)] = 4,000 만원 상환 | -60% |
| 사례3 |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222.426pt일때<br>→ 1억 + [1억 × (-80%)] = 2,000 만원 상환 | -80% |
| 사례4 | 만기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가격이 0pt일때<br>→ 1억 + [1억 × (-100%)] = 0 원 상환 | -100% |

##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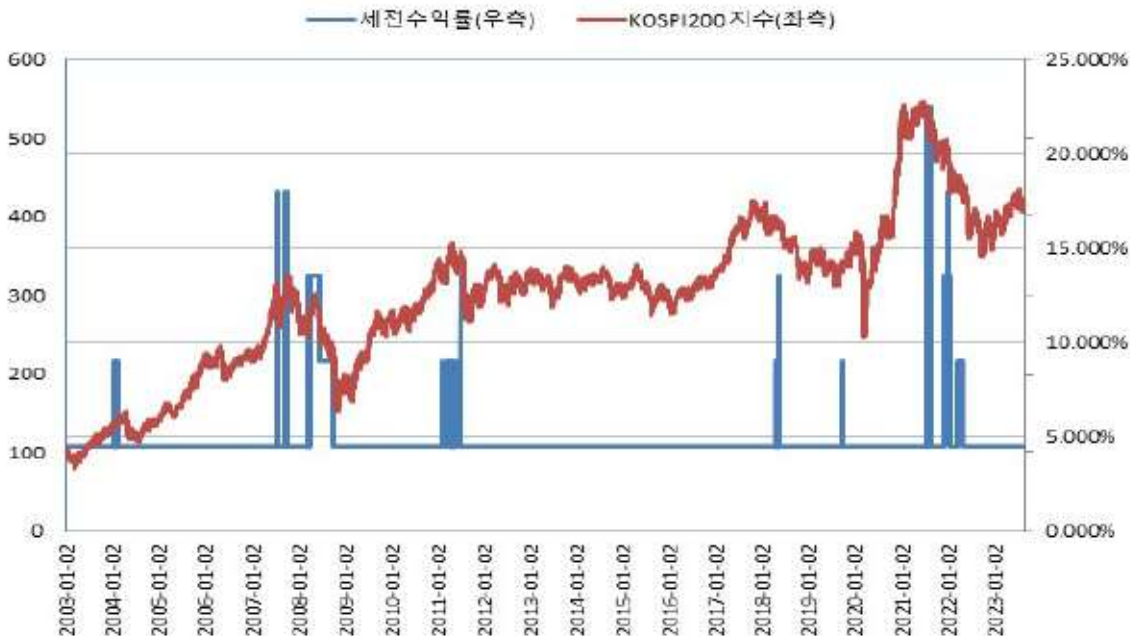


(*기초자산의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을시)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수익률 모의실험)

| 상환구분 | 수익률 | 발생횟수 | 발생빈도 |
|---|---|---|---|
| 1차 조기상환 | 4.50% | 4,855 | 94.94% |
| 2차 조기상환 | 9.00% | 155 | 3.03% |
| 3차 조기상환 | 13.50% | 88 | 1.72% |
| 4차 조기상환 | 18.00% | 11 | 0.22% |

| 상환구분 | 수익률 | 발생횟수 | 발생빈도 |
|---|---|---|---|
| 5차 조기상환 | 22.50% | 5 | 0.10% |
| 만기상환 | 27.00% | 0 | 0.00% |
| 만기상환손실 | -10% ~ 0% | 0 | 0.00% |
| | -20% ~ -10% | 0 | 0.00% |
| | -30% ~ -20% | 0 | 0.00% |
| | -40% ~ -30% | 0 | 0.00% |
| | -50% ~ -40% | 0 | 0.00% |
| | -50%이하 | 0 | 0.00% |
| 진행중 | | 0 | 0.00% |
| Total | | 5,114 | 100.00% |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3년 01월 02일부터 2023년 09월 01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3년 01월 02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114회)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4)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 |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 | |

|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세전) |
|---|---|---|
| 최대손실액 | 니하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에 증권수량 x 1증권당 액면가액 x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으로 만기상환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이때 지급액은 [액면금액×(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100.00% |
| 최대이익액 |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종가 기준)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 이상인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만기시 잔존보유수량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의 127.00%를 지급받습니다. | 27.00% (연 9.000%) |

## 2. 권리의 내용

###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

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8일 | 액면금액 × 104.50% |
| 2차 | 2027년 09월 17일 | 액면금액 × 109.00% |
| 3차 | 2028년 03월 17일 | 액면금액 × 113.50% |
| 4차 | 2028년 09월 19일 | 액면금액 × 118.00% |
| 5차 | 2029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22.5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 × 127.0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 | 액면금액 × 127.00%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종가 기준) |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포함)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종가 기준) | 기초자산의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4일
○ 최종관찰일 :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이 복수인 경우 그 중 마지막 날)

라. 기타 중요사항

○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기초자산 모두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소 영업일이 최초기준가격결정일 및 평가일이 됨.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3영업일)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발행인은 '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매영업일 오후7시이후 고시되는 당일의 공정가액은 아시아자산의 경우는 당일종가, 비아시아자산의 경우에는 직전영업일의 종가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단, 기초자산의 종가가 확정되는 시차로 인해 공정가액 확인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 등 기초자산의 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중도상환 신청방법 |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서면 요청 또는 HTS, 전화로 요청 |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발행일 익 영업일부터 중도상환 신청 불가능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단, 조기/만기 상환평가 확정시 중도상환 신청 불가) |
| 중도상환 신청불가능일 | 다음 ①부터 ④까지의 해당 영업일<br>① 최종 관찰일 이전 4영업일부터 최종 관찰일(포함) 까지의 영업일<br>② 자동조기상환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br>③ 만기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br>④ 수익지급평가일과 그 직전 영업일 |
|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신청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취소 가능<br>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 오후 4시까지 취소 가능 |
| 중도상환가격 평가일 |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중도상환신청일 당일<br>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중도상환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및 영업일<br>(단,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아시아자산은 가격결정일 당일의 종가(T), 비아시아자산은 가격결정일 전거래소영업일(T-1)의 종가가 모두 반영된 평가일의 공정가액이어야한다.) * 사례참조 |

| | |
|---|---|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오전 10시 59분 이전 신청분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 익영업일<br>오전 11시 이후 신청분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불포함) 익영업일 |
| 중도상환 신청 단위 |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 중도상환가격 | 중도상환가격평가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br><br>중도상환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금융상품 > ELS/DLS/ETN > ELS/DLS 기준가조회'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 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br>-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 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br><br>**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
|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증권의 양도 신청가능일 및 단위는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및 단위와 동일 합니다. |

* 예시사례 : 기초자산이 HSCEI 지수 / EUROSTOXX50 지수 / S&P500 지수 인 ELS를 중도상환신청후 신청일부터 결제일까지 휴장일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
[ 매영업일 오후7시 이후 고시되는 당일의 공정가액은 아시아자산의 경우는 당일종가, 비아시아자산의 경우에는 직전영업일의 종가가 반영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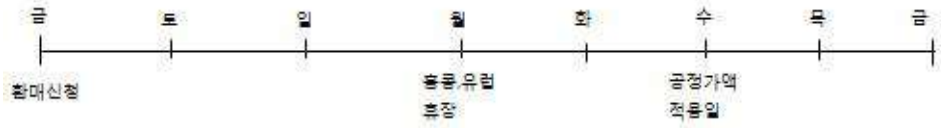


중도상환요청시 민평가액 적용 사례예시

| |
|---|
| 중도상환요청시 : 중도상환결정일= 환매신청일(T)+ 익영업일(1)<br>월요일 공정가액 미적용 사유 : 홍콩휴장으로 인하여 HSCEI 의 종가가 미반영<br>화요일 공정가액 미적용 사유 : 유럽휴장으로 인한 EURO STOXX 50 의 종가가 미반영<br>=> 수요일 7시에 고시되는 공정가액이 위 사례에 중도상환 공정가액<br>(단, 한국거래소도 영업일이어야함 ) |

##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증거금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 금융상품몰 > ELS/DLS/ETN > ELS/DLS공지사항' 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미래에셋증권 고객지원센터(1588-68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

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평가일 및 상환일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

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이라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 평가일 및 상환일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o 기초자산에 대해 거래정지,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등 기초자산의 매매 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o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발행인의 자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유화, 수용,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정부, 정부기관 또는 정부소유법인에 양도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인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8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중요하게 조정 또는 폐지하기로 발표하거나 기초자산 가격 산출이 중단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인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

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평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결평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단, 정해진 조기종결평가일이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니면 직후 그러한 날을 조기종결평가일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에 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본 증권 보유자에게의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Index Disruption)]: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3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

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 변경사유 | 조정후 기준가격 |
|---|---|
| 유상증자<br>(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 변경사유 | 조정후 기준가격 |
|---|---|
|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
|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 기타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

○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 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발행인이 상환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하고, 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법정이율에 따른다)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상환일이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한 조건('2. 권리의 내용' 또는 '3. 권리의 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발행인에 의해 조정된 경우(예로써 영업일 조정, 공휴일, 시장교란사유 등의 경우) 또는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행인에 의해 조정된 경우 발행인은 변경 전 상환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또는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

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Ⅲ. 투자위험요소

| |
|---|
|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1. 가격변동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br><br>-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br><br>-**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미치는 요인별 위험 | 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br><br>-**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br><br>-**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br><br>-**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br><br>-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br><br>-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 |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평가손실위험 |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 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2. 발행인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br><br>-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 본 증권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른 **무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br><br>- 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6년 08월 14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셋증권 제58기 반기보고서(2026년01월01일~2026년 6월30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지연위험 |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6%(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하고, 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법정이율에 따른다)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조기종결 위험 | -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변화 등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시 기타 발행인이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조기종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증권은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 됩니다. 기초자산과 관련한 조기종결사유의 발생으로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그 외 시장교란사유, 천재지변 기타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br><br>**-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중도상환시<br>원금손실 위험 | - 투자자 요청으로 본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중도상환가격<br>산정 관련<br>이해상충 위험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4.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일반적인 위험 |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br>-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 환금성 위험 |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br><br>-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 매입하는 것이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br><br>-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br><br>-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 1. 기초자산의 명칭

가.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OSPI200 지수

## 2. 기초자산의 개요

### (1) KOSPI200 지수

한국주가지수 200(이하 "KOSPI200 지수"라 함)은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장내 파생상품거래에 적합하도록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KOSPI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100p로 하여 1994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였습니다.

## 3.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KOSPI2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이고, KOSPI2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 KOSPI200 지수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또는 당사 HTS인 KAIROS[0153]화면 및 각종 신문 등에서 KOSPI20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 KOSPI200 지수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5.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6년 01월 02일 ~ 2026년 09월 08일

나. 기간 중 최고치
KOSPI200 지수 : 1,477.22 (2026년 06월 22일)

다. 기간 중 최저치
KOSPI200 지수 : 123.27 (2008년 10월 24일)

미래에셋증권 제38115회 (KOSPI200 가격변동 추이)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 Ⅵ. 자금의 사용목적

##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 구분 | 금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10,000,000,000원 |
| 발행제비용 (2) | 500,000원 |
| 순 수 입 금 [ (1)-(2) ] | 9,999,500,000원 |

※ 발행금액을 100억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발행인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6년 05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 구분 | | ELS | | | | | | DLS | | | | | |
|---|---|---|---|---|---|---|---|---|---|---|---|---|---|
| | | 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 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
|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23년 | 건 | 939 | 522 | 1461 | 2 | 0 | 2 | 3 | 2 | 5 | 0 | 0 | 0 |
| | 금액 | 27156 | 3582 | 30738 | 23 | 0 | 23 | 4 | 4 | 8 | 0 | 0 | 0 |
| 2024년 | 건 | 637 | 200 | 837 | 15 | 0 | 15 | 4 | 6 | 10 | 0 | 0 | 0 |
| | 금액 | 11744 | 2389 | 14133 | 166 | 0 | 166 | 10 | 9 | 19 | 0 | 0 | 0 |
| 2025년 | 건 | 881 | 181 | 1062 | 124 | 20 | 144 | 0 | 5 | 5 | 0 | 1 | 1 |
| | 금액 | 17667 | 3068 | 20735 | 3268 | 254 | 3522 | 0 | 7 | 7 | 0 | 2 | 2 |
| 2026년 | 건 | 415 | 99 | 514 | 415 | 88 | 503 | 0 | 1 | 1 | 0 | 1 | 1 |
| | 금액 | 8047 | 1881 | 9928 | 8019 | 1733 | 9752 | 0 | 2 | 2 | 0 | 2 | 2 |
| 합계 | 건 | 2872 | 1002 | 3874 | 556 | 108 | 664 | 7 | 14 | 21 | 0 | 2 | 2 |
| | 금액 | 64614 | 10920 | 75534 | 11476 | 1987 | 13463 | 14 | 22 | 36 | 0 | 4 | 4 |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6년 05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 구분 | | ELB | | | | | | DLB | | | | | |
|---|---|---|---|---|---|---|---|---|---|---|---|---|---|
| | | 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 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
|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23년 | 건 | 112 | 8 | 120 | 4 | 0 | 4 | 21 | 0 | 21 | 1 | 0 | 1 |
| | 금액 | 37268 | 18 | 37286 | 72 | 0 | 72 | 977 | 0 | 977 | 300 | 0 | 300 |
| 2024년 | 건 | 194 | 37 | 231 | 23 | 0 | 23 | 4 | 0 | 4 | 0 | 0 | 0 |
| | 금액 | 30445 | 3012 | 33457 | 2544 | 0 | 2544 | 14 | 0 | 14 | 0 | 0 | 0 |
| 2025년 | 건 | 318 | 8 | 326 | 159 | 2 | 161 | 0 | 5 | 5 | 0 | 1 | 1 |
| | 금액 | 40310 | 68 | 40378 | 30010 | 14 | 30024 | 0 | 2150 | 2150 | 0 | 50 | 50 |
| 2026년 | 건 | 134 | 7 | 141 | 127 | 7 | 134 | 0 | 1 | 1 | 0 | 1 | 1 |
| | 금액 | 6325 | 524 | 6849 | 6033 | 524 | 6557 | 0 | 1 | 1 | 0 | 1 | 1 |

| 구분 | | ELB | | | | | | DLB | | | | | |
|---|---|---|---|---|---|---|---|---|---|---|---|---|---|
| | | 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 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
|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합계 | 건 | 758 | 60 | 818 | 313 | 9 | 322 | 25 | 6 | 31 | 1 | 2 | 3 |
| | 금액 | 114348 | 3622 | 117970 | 38659 | 538 | 39197 | 991 | 2151 | 3142 | 300 | 51 | 351 |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6년 05월 31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 구분 | | ELW | | | | | |
|---|---|---|---|---|---|---|---|
| | | 발행총계 | | | 발행잔액 | | |
|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2023년 | 건 | 3002 | 0 | 3002 | 0 | 0 | 0 |
| | 금액 | 41963 | 0 | 41963 | 0 | 0 | 0 |
| 2024년 | 건 | 2246 | 0 | 2246 | 0 | 0 | 0 |
| | 금액 | 33451 | 0 | 33451 | 0 | 0 | 0 |
| 2025년 | 건 | 968 | 0 | 968 | 77 | 0 | 77 |
| | 금액 | 9707 | 0 | 9707 | 783 | 0 | 783 |
| 2026년 | 건 | 572 | 0 | 572 | 508 | 0 | 508 |
| | 금액 | 5745 | 0 | 5745 | 5103 | 0 | 5103 |
| 합계 | 건 | 6788 | 0 | 6788 | 585 | 0 | 585 |
| | 금액 | 90866 | 0 | 90866 | 5886 | 0 | 5886 |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 라. 신용환산액 (2026.05.31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 ELS | ELB | ELW | DLS | DLB | 기타 | 계 |
|---|---|---|---|---|---|---|---|
| 합계 | 849 | 182 | 0 | 138 | 20 | 8,019 | 9,208 |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 잔존기간 | 거래 종류 | | | | |
|---|---|---|---|---|---|
| | 금리 | 통화 및 금 | 주식 (주가지수) | 귀금속 (금 제외) | 기타 |
| 1년이하 | 0.0% | 1.0% | 6.0% | 7.0% | 10.0% |
| 1년초과 5년이하 | 0.5% | 5.0% | 8.0% | 7.0% | 12.0% |
| 5년초과 | 1.5% | 7.5% | 10.0% | 8.0% | 15.0% |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